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4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최종윤·강선우·김민철

김승남・김진표・남인순

윤관석·조오섭·한병도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의 경우 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 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받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검사명령) ① 식품의약품	제22조(검사명령) ①
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업자에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u>검사</u>	<u>총리령으</u>
<u>를 받을</u>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
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	<u> </u>
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